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장 애 인 · 노 인 · 임 산 부 등 의 편 의
증 진 보 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2018.1.)에 따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1))
- 나.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라.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마.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8))

바.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나목(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중 “미용원·목욕장으로서”를 “미용원으로서”로 하고, “5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를 (3)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 내지 (5)를 각각 (5) 내지 (7)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 중 “5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6)을 (8)로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을 (9)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

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종 근 릿 생 활 시 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u>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u>	<u>의무</u>	<u>권장</u>	<u>의무</u>	<u>의무</u>	<u>권장</u>	<u>권장</u>	<u>권장</u>	<u>권장</u>	<u>권장</u>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u>(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u>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u>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u>	<u>의무</u>	<u>권장</u>	<u>의무</u>	<u>의무</u>	<u>권장</u>	<u>권장</u>	<u>권장</u>	<u>권장</u>	<u>권장</u>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종 근 름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 식점·제과점 등 음 료·차·음식·빵· 떡·과자 등을 조리 하거나 제조하여 판 매하는 시설로서 제1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 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u>일반음식점(50제곱 미터 이상 300제곱 미터 미만만 해당한 다)</u>	<u>의 무</u>	<u>권 장</u>	<u>의 무</u>	<u>의 무</u>	<u>권 장</u>	<u>권 장</u>	<u>권 장</u>	<u>권 장</u>	<u>권 장</u>								
	공연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안마시술소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
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7~3308